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6. 4.

국토교통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5년 10월 1일, 강준현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 2025년 10월 2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2025. 11. 18.)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434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2026. 4. 14.) 상정, 축조심사, 의결
(원안가결)

제3차 국토교통위원회(2026. 4. 16.)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토
론, 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국회의원 강준현)

2024년 9월 개교한 세종공동캠퍼스와 관련하여, 현행법은 행정중심 복합도시건설사업 사업시행자가 공동캠퍼스를 조성한 후, ‘동법 제63조의9제5항에 따른 공익법인’에 기부 또는 출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공익법인이 공동캠퍼스 자산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재산세 등 상당 규모의 세금을 납부해야 함.

그러나, 현재 공동캠퍼스를 운영하는 공익법인은 자체예산 부족으로 교육시설 운영에 국비와 지방비를 보조받고 있으므로, 세금이 부과되는 경우 국비 및 지방비 보조금으로 각종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음.

또한, 공동캠퍼스는 행정중심복합도시 사업시행자가 막대한 예산(약 2,800억원)을 투입하여 조성한 교육시설로서, 현행의 공익법인뿐만 아니라 이를 보다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국가 및 지자체까지 기부·출연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사업시행자가 공동캠퍼스를 기부·출연할 수 있는 대상에 비과세 대상이자 안정적인 자산 관리가 가능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추가하여, 공동캠퍼스가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63조의9제2항).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박재유)

개정안은 사업시행자가 조성한 공동캠퍼스의 일부를 기부 또는 출연할 수 있는 대상에 국가, 지방자치단체를 추가하려는 것임.

공동캠퍼스는 현행법 제63조의9제1항1)에 따라 산학연 협력 활성화를 통한 자족기능 확충을 위하여 조성하는 미래형 캠퍼스로서,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캠퍼스를 임대형과 분양형으로 나누어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함)가 조성하고 있음.

임대형은 2024년 9월에 서울대 등 4개 대학이 입주하고 충남대가 2026년 3월 입주 예정이며, 분양형은 2028년 이후 공주대 등 3개 대학이 순차적으로 입주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음.

- 세종공동캠퍼스 개요 -

- 위 치 : 세종특별자치시 4-2생활권 대학용지(대학4-2·7~16)
- 조 성 : 다양한 수요대응을 위해 캠퍼스를 분양형과 임대형으로 나누어 사업시행자(LH)가 조성(총사업비 약 2,800억원 투입)
- 구 성 : 임대형 캠퍼스(LH가 건물을 건립·기부하여 운영법인이 임대) 및 분양형 캠퍼스(LH가 부지를 조성·분양하여 입주기관이 교사시설 건립)
 - ※ (임대형) 총 연면적 약 7.3만㎡(입주공간 3만㎡, 공동이용시설 3.9만㎡)
 - (분양형) 총 부지면적 약 16.2만㎡(10개 필지, 필지별 0.9~1.8만㎡)
- 정 원 : 총 학생정원 약 3천명(임대형 1천명, 분양형 2천명)

※ 자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1)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63조의9(공동캠퍼스 조성 및 운영 등) ① 건설청장은 산학연 협력 활성화를 통한 자족기능 확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자가 입주할 수 있는 교사(校舎), 연구시설 등과 그 부지(이하 “공동캠퍼스”라 한다)를 조성하게 할 수 있다.

1.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대학
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내외 연구기관

【 세종공동캠퍼스 입주(예정) 대학 현황 】

구분	대학	정원 (명)	계열	연면적 (㎡)	현재 단계	개교 (예정)
임대형	서울대	72	행정·정책대학원	2,400	개교 완료	'24년 9월
	KDI	114	행정·정책대학원	2,400		
	한밭대	252	AI / ICT 등 대학·대 학원	5,000		
	충북대	150	수의대·대학원	4,715		
	충남대	290	의대·대학원	14,990	준공 완료	'26년 3 월
분양형	충남대	800	AI / ICT 등 대학·대 학원	35,984 (부지면적)	사업시행자 선정 완료	'28년
	공주대	599	AI / ICT 등 대학·대 학원	25,102 (부지면적)	사업시행자 선정 완료	'28년
	고려대 (세종 캠퍼스)	790	행정전문대학원, IT·AI 관련 대학	22,700 (부지면적)	건축허가 절 차 진행	'29년

※ 자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그리고, 현행법 제63조의9제5항²⁾에 따라 2023년 10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라 함)은 공동캠퍼스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고 학문 및 과학기술의 연구·조사·개발·보급 등의 지원을 하기 위하여 세종공동캠퍼스 공익법인(이하 “운영법인³⁾”이라 함)을 설립하였음.

2)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63조의9(공동캠퍼스 조성 및 운영 등) ⑤ 건설청장은 공동캠퍼스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고, 학문 및 과학기술의 연구·조사·개발·보급 등 지원을 위하여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이하 “공익법인”이라 한다)을 공동캠퍼스에 둘 수 있다. 이 경우 공익법인의 설립 등기와 정관 및 사업의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세종공동캠퍼스운영법인 정관에서 명칭을 “운영법인”이라 규정하였으므로, 이하에서는 “운영법인”이라 함.

「세종공동캠퍼스운영법인 정관」

제1조(명칭) 본 정관에 따라 설립되는 재단법인의 명칭은 “세종공동캠퍼스운영법인”(이하 “법인”)이라고 한다.

행복청은 2023년도부터 운영법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세종공동캠퍼스 공익법인 운영’ 사업을 하고 있으며, 이 사업의 진행 경과는 다음과 같음.

운영법인 설립 및 운영을 위한 예산은 법인 설립비 및 운영비 목적으로 2023년도에 9억 6,400만원⁴⁾이 신규 편성되었는데,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부대의견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공동캠퍼스 운영법인에 대한 운영계획 수립 시 세종특별자치시와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촉구⁵⁾하였음.

그리고, 기획재정부는 2023년도 예산안 부대의견에 따라 행복청에 공동캠퍼스 운영비 분담 비율에 대해 세종특별자치시와 협의가 필요한 점 등을 이유로 이 사업의 2023년도 예산을 수시배정⁶⁾ 예산으로 지정하였음.

이에 2023년 9월 행복청과 세종특별자치시는 운영법인의 운영비를 각각 50%씩 분담하는 것으로 협의를 완료하는 등 행복청이 2023년도 예산안 부대의견을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가 이 사업의 수시배정을 해제하지 아니하여 이 사업의 2023년도 예산액 9억 6,400만원은 전액 불용되었음.

4) 기관운영출연금(350-01) 7억 6,400만원, 사업출연금(350-02) 2억원

5) 「2023회계연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부대의견 (53)

6) 수시배정이란 기획재정부장관이 재정의 효율적인 집행관리를 위하여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에도 불구하고 예산배정을 유보하는 것으로, 수시배정 대상사업의 선정 기준은 ① 사업의 기본 구성요건이 확정되지 않은 사업(채원분담 주체간의 분담비율이 미정인 사업 등), ② 법률 제·개정 협의 등의 조건이 충족된 후 집행되어야 하는 사업, ③ 당초 사업 여건이 변경되어 점검이 필요한 사업, ④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점검이 필요한 사업임.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p.10~11)

한편, 국토교통위원회는 2024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행복청이 공동캠퍼스 개교를 차질 없이 지원할 수 있도록 공동캠퍼스 운영 예산 134억원(취득세 등 108억원, 운영비 26억원)을 증액 의결하였음.

그런데,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 사업의 2024년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2024년도 예산을 운영비 6억 4,600만원⁷⁾으로 최종 의결함과 아울러 부대의견으로 ‘정부는 LH가 조성한 캠퍼스를 세종특별자치시로 이관하고,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세종특별자치시의 캠퍼스 운영 및 관리근거를 명확히 마련’하도록 촉구⁸⁾하였음.

이 사업의 2025년도 예산은 12억 6,300만원⁹⁾으로 편성되었으나, 공동캠퍼스 소유·운영 주체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황임.

현행법상 공동캠퍼스 소유·운영 주체는 운영법인¹⁰⁾이지만, 기획재정부는 2024년도 예산안 부대의견과 같이 공동캠퍼스 사무권한을 세종특별자치시로 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고, 세종특별자치시는

7) 기관운영출연금(350-01) 6억 800만원, 사업출연금(350-02) 3,800만원

8) 「2024회계연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부대의견 (11)

- 정부는 세종공동캠퍼스가 차질없이 개교되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LH가 조성한 캠퍼스를 세종특별자치시로 이관하고,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세종특별자치시의 캠퍼스 운영 및 관리근거를 명확히 마련한다.

9) 기관운영출연금(350-01) 12억 5,700만원, 사업출연금(350-02) 600만원

10)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63조의9(공동캠퍼스 조성 및 운영 등) ②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공동캠퍼스를 조성한 경우에는 그 일부를 제5항에 따른 공익법인에 기부 또는 출연할 수 있다.

2030년에 이관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입주대학들은 국가에서 지방 자치단체로 이관·운영될 경우 지원 축소가 우려되며 계약 대상 변경은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한다는 입장임.

이와 같이, 관계기관간 이견이 계속되면서 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 이 사업의 예산이 편성되지 못하였고, 이에 공동캠퍼스 운영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음.

특히, LH가 조성한 공동캠퍼스 부지와 임대형 캠퍼스 시설 및 행복청과 협약을 체결하여 한국사학진흥재단이 건립한 임대형 캠퍼스 기숙사는 각각 LH와 한국사학진흥재단이 운영법인에 기부 또는 출연할 수 있으나, 운영법인은 취득세 108억 6,000만원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으로 취득이 지연되고 있음.

또한, 2025년에 납부 의무가 발생한 캠퍼스(건물, 토지)에 대한 재산세(4억 7,400만원), 종합부동산세(3억 4,500만원)는 LH가 우선 납부하고 LH와 운영법인간 계약에 따라 운영법인이 LH에 상환¹¹⁾하여야 하지만, 운영법인의 예산 부족으로 1억 1,600만원만 LH에 상환한 상황이며,

2025년에 납부 의무가 발생한 기숙사(건물)에 대한 재산세(4,000만원)

11) LH와 운영법인간 계약에 따라 2025년도 이후 납부의무가 발생하는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는 운영법인이 LH에 상환하여야 함.

는 한국사학재단이 납부하였지만, 한국사학재단은 매년 발생하는 재산세에 대해서는 행복청과 운영법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입장임.

【 세종공동캠퍼스 관련 세금 현황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	2025년	비 고
LH	캠퍼스 (토지)	취득세	3,730	-	미확보로 취득 지연
		재산세	48	358	(2025년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LH 우선 납부 후 운영법인이 상환
		종합부동산세	3	345	
	캠퍼스 (건물)	취득세	5,700	-	미확보로 취득 지연
		재산세	-	116	(2025년 재산세) LH 우선 납부 후 운영법인이 상환
	한국사학 진흥재단	취득세	1,430	-	미확보로 취득 지연
		재산세	-	40	(2025년 재산세) 한국사학진흥재단 납부

주1) 2024년 캠퍼스(토지) 재산세·종합부동산세: 공동캠퍼스가 과세기준일(매년 6. 1.)을 지난 2024. 9. 준공되었으므로 LH에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납부의무가 있음.

주2) 2025년 캠퍼스(토지, 건물)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운영법인 예산 부족으로 LH에 116백만원 상환

※ 자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따라서, 2026년에 운영법인은 캠퍼스(토지, 건물)에 대한 2025년도 미상환 재산세·종합부동산세 7억 300만원과 2026년도 재산세·종합부동산세 8억 1,900만원을 합한 15억 2,200만원을 LH에 상환하여야 하고, 기숙사(건물)에 대한 재산세 4,000만원도 한국사학진흥재단에 상환해야 함.

즉, ① 공동캠퍼스 소유·운영 주체 문제가 계속되고 있고, ② 운영법

인이 자체예산 부족으로 공동캠퍼스를 취득할 수 없으며, ③ 취득에 따른 재산세·종합부동산세를 LH와 한국사학진흥재단이 운영법인 대신 납부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개정안은 사업시행자가 공동캠퍼스를 기부·출연할 수 있는 대상에 비과세 대상이자 안정적인 자산 관리가 가능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추가함으로써, 공동캠퍼스가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게 하려는 것으로 입법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생각됨.

국토교통부는 지역균형발전, 행정수도 완성, 공동캠퍼스의 안정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개정안에 동의한다는 의견임.

행복청은 개정안에 따르는 경우 LH가 임대형캠퍼스 건물·토지분(기숙사 제외)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출연할 수 있고, 한국사학진흥재단과의 협약을 수정¹²⁾하여 임대형캠퍼스 기숙사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할 수 있으므로, 공동캠퍼스에 대한 세금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는 의견임.

기획재정부는 기부채납을 받는 대상으로 한시적 조직인 행복청을 규정하는 것은 부적합하고, 2024년도 예산안 부대의견과 같이 공동캠퍼스

12) 2022년 3월 행복청과 한국사학진흥재단이 체결한 협약서에 따르면, 기숙사사업 시설의 소유권은 준공과 동시에 “운영법인”에 귀속되므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숙사사업의 소유권이 귀속되려면 협약을 수정하여야 함.

사무권한을 세종특별자치시로 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개정안의 “국가”는 삭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세종특별자치시는 공동캠퍼스 사무권한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에서 세종특별자치시장으로 이관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과 아울러 소유권 및 관리권의 이관 시기를 2030년¹³⁾으로 하는 부칙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국토법안심사소위원장 이종욱)

사업시행자가 공동캠퍼스를 기부·출연할 수 있는 대상에 비과세 대상이자 안정적인 자산 관리가 가능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추가하려는 내용으로 원안 의결하였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13) 세종특별자치시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 세출 중 '제63조의9에 따른 공동캠퍼스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비용'이 2029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한 점(법률 제19770호 부칙 제2조), 공동캠퍼스의 조성 및 입주 완료 시기가 2029년 말인 점을 고려할 때 2030년 이후로 소유권 및 관리권을 이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7. 법제사법위원회 체계 · 자구심사 내용

체계 · 자구심사과정을 거쳤음.

붙임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 · 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 호

신 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 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의9제2항 중 “제5항에 따른 공익법인”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제5항에 따른 공익법인”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3조의9(공동캠퍼스 조성 및 운영 등) ① (생 략)	제63조의9(공동캠퍼스 조성 및 운영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공동캠퍼스를 조성한 경우에는 그 일부를 제5항에 따른 공익 법인에 기부 또는 출연할 수 있다.	② ----- ----- ----- <u>국가, 지방자치단체</u> <u>또는 제5항에 따른 공익법인</u> ----- -----.
③ ~ ⑩ (생 략)	③ ~ ⑩ (현행과 같음)